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90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

2016년 3월 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자로”를 “사람으
로”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의 후단을 삭제하고,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다
음과 같이 한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속 공무원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제5조 중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구성) ① (생략)</p> <p>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광진구청장 (이하 “구청장”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u>자</u>로 한다. <u>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2인으로 한다.</u></p> <p>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자</p> <p>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p> <p>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p> <p>4. 주택관리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p> <p>5. <u>고문변호사</u></p> <p>6. <u>구의원 1인</u></p> <p>7. <u>구 소속 공무원</u></p> <p>제5조(기능) 위원회는 공동주택의 원활한 관리 등을 위하여 심의 · 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5.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6. (생략)</p>	<p>제4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u>각 호의 어느 하나</u>-----</p> <p>-----<u>사람으로</u>-----</p> <p>----. <u><후단 삭제></u></p> <p>1.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속 공무원</p> <p>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p> <p>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p> <p>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p> <p>제5조(기능)-----</p> <p>-----</p> <p>-----</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u></p> <p>7. (현행과 같음)</p>